

## 「대외무역법」 개정안 국회 통과

- 전략물자관리원을 무역안보관리원으로 개편
- 무역안보 환경변화에 따른 전략물자 지정 근거 확대

「대외무역법」 개정안이 1.25.(목)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. 금번 개정안은 무역안보 환경변화와 국제적인 수출통제 강화 추세를 고려하여 ▲ 전략물자관리원을 무역안보관리원으로 개편하고, ▲ 전략물자\*의 지정 근거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.

\* 전략물자 : 대량파괴무기 등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품목·기술로, 수출시 정부 허가 要

첫째, 전략물자관리원의 명칭을 무역안보관리원으로 변경하고, 무역안보 정책수립 등 기능을 확대함으로써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정부 정책수립과 산업계 대응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둘째, 현행 국제수출통제체제\*에 따라 지정하던 전략물자를 “이에 준하는 다자간 수출통제 공조”에 따라서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지정 근거를 확대하였다.

\*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2조 : 1. WA(바세나르체제), 2. NSG(핵공급국그룹), 3. MTCR(미사일기술 통제체제), 4. AG(호주그룹), 5. CWC(화학무기협약), 6. BWC(생물무기협약), 7. ATT(무기거래조약)

셋째, 그 밖의 개정사항으로 무허가수출의 적발을 위해 전략물자 판정 결과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, 조건부허가 및 이동중지명령 위반에 대한 벌칙 근거 등을 신설하였다.

대외무역법 개정안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, 공포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. 산업부는 법 시행에 맞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하여 시행령을 마련하는 한편, 무역안보관리원으로서의 개편도 내실 있게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.

담당 부서	무역안보정책관	책임자	과 장	김정예 (044-203-4830)
	무역안보정책과	담당자	사무관	서현우 (044-203-4836)

**① 전략물자 지정 사유 추가(제19조)**

- 전통적인 국제수출통제체제\*에서 만장일치 합의되지 않은 품목·기술에 대해서도 “이에 준하는 다자간 수출통제 공조”에 따라서 전략물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

\*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2조 : 1. WA(바세나르체제), 2. NSG(핵공급국그룹), 3. MTCR(미사일기술 통제체제), 4. AG(호주그룹), 5. CWC(화학무기협약), 6. BWC(생물무기협약), 7. ATT(무기거래조약)

**② 전략물자 전문판정\* 및 자가판정\*\* 점검 강화(제20조, 제20조의2)**

\* 전문판정 : 무역거래자가 전략물자관리원에 전략물자인지 여부 판정을 의뢰

\*\* 자가판정 : 무역거래자가 스스로 전략물자인지 여부를 확인

- 전략물자 판정 결과에 오류가 있는지 점검하여 고의 또는 실수로 전략물자를 허가 없이 수출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강화

**③ 경유 및 환적에 대한 이동중지명령(제21조)**

- 국내 항만, 공항 등에서 전략물자가 허가 없이 경유 및 환적되어 우려국으로 유출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출 외에 경유 및 환적의 경우에도 이동중지명령 근거 마련

**④ 전략물자관리원 ⇒ 무역안보관리원 개편(제25조)**

\* 기관 개요 : (정원) 72명, (예산) 103억원, (위치)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 16층

- “전략물자관리원” 명칭을 “무역안보관리원”으로 변경하고, 기존 “판정, 교육, 정보제공 등” 중심의 업무에 “무역안보 정책수립 지원, 산업영향 분석 지원, 국제협력 지원 등”의 기능을 추가

**⑤ 수출입제한 등 의무이행 확보 수단 마련(제30조, 제53조, 제59조 등)**

- 조건부허가에 따른 조건 未이행시 벌칙(5년 이하 징역), 이동중지명령 위반시 수출입제한(3년 이하), 그 외 과태료\* 규정도 정비

\* 허가면제 사유 관련 자료 未제출시 : 1천만원 이하 과태료

전략물자 판정 결과 관련 자료 未제출시 : 2천만원 이하 과태료